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제안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의 등록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신청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형식승인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수수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료 금액(예시 : 계량법 제조업 등록 : 50,000원 등)으로 직접 기재(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6호서식)
- 나.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시험기간 + 20일”로 하던 것을 “시험기간 + 15일”로 단축(안 별지 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6.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수수료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을 “(등록구분별) 계량기 제조업 : 50,000원, 계량기 수리업 : 30,000원, 계량증명업 : 3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 수수료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을 “30,000원 / 계량기 종류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서 처리기간인 “시험기간 + 20일”을 “시험기간 +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장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인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장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수리·증명)범위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수리·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등록구분별) 계량기 제조업 : 50,000원 계량기 수리업 : 30,000원 계량증명업 : 30,000원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현장요건 조사	결 제	등록증 발급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현장요건 조사	결 제	등록증 발급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